



보도	2022.11.30.(수) 조간	배포	2022.11.29.(화)		
담당	법무실	책임자	팀 장	정은정	(02-3145-5912)
부서	은행팀	담당자	선임조사역	정연정	(02-3145-5914)

「FSS. the F.A.S.T.」 프로젝트 #04 관련 후속조치 -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를 통한 예측가능성·투명성 제고 실천방안 -

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.

### 주요 내용

- □ 비조치의견서의 신청 前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·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, 신청 後에도 담당부서 배정기한(5영업일) 도입, 관련부서장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책임감 있게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.
- □ 특히 복잡한 사안은 **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적극 활용**하는 한편, 최근 IT 분야의 신청 급증에 대응하여 IT 전문가를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겠습니다.

#### 1. 추진 배경

- □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 및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비조치의견서\*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
  - \* (개념) 금감원장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」 §2)
    - (연왕) 최근 5년간17.~21.) 연 평균 76건 접수·55건 화신 // '22년 1~10월 76건 접수·44건 화신
  - **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연**되거나, 접수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신청내용이 다수부서 관련사안 또는 사실관계·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 추진\*
    - \*「FSS, the F.A.S.T」프로젝트 중 "금융감독업무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('22.11.15.)"의 후속조치

#### 2. 개선방안

# 1 시전협의 단계부터 보고·관리하는 체계 수립

- □ (현행) 금융회사가 비조치의견서를 금감원에 정식 신청하기 前 사전 협의하는 경우 금감원 내부보고 미흡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 존재
- □ (개선) 금감원 담당부서는 사전협의 요청시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,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(법무실)에도 통보\*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·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전협의 기간 단축
  - \* 사전협의 요청일·요청자, 담당부서, 사전협의 내용, 보고일·보고대상자 등
  - 특히 **중요사안**의 경우 **부서장**은 **담당 임원**에게도 사전협의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

## 2 빠른 담당부서 결정을 통해 처리의 신속성 제고

- □ (현행)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접수 이후에도 다수부서 관련사안 등의 경우 담당부서 결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처리가 지연
  - 또한, 금감원은 **법규상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**\*을 **준수\*\***하고 있으나,
    - \* **담당부서 배정 이후 30일(영업일)** 이내 회신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」§6®)
    - \*\* (담당부서 배정 후 회신까지 평균 처리기간) 최근 5년(17.~'21.)간 : 26영업일, '22년 1~10월중 : 17영업일
  - **금융회사**는 금감원 배정이 아닌, **금융위 신청시점**\*부터 비조치의견서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**처리가 지연**된다고 **오인**할 소지
    - \* 비조치의견서 접수창구는 **금융위로 일원화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」§5①) 되어 있고, 금융위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**금감원으로 이첩·배정**
- □ (개선) 다수부서 관련사안의 경우 부서장(부원장보) 협의체를 통해 담당부서 등을 신속히 결정
  - 또한, 금융위 이첩일로부터 5영업일(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) 이내 담당 부서를 신속히 배정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히 처리

# 3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결론 도출

- □ (현행) 선례가 없거나, 쟁점사항 복잡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 존재
- □ (개선)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(기획·경영 補)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회에 부의하여 처리
  - 심의회를 전체회의·소회의로 이원화하고, 다수부서 관련사안 중 사실관계·쟁점 간명 등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심의

# 4 IT 전문가의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근거 마련

- □ (현행) 최근 IT 분야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급증\*하고 있음에도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 중 IT 전문가 부재
  - \* 최근 3년간, 총 회신건수 180건 중 IT분야가 76건(42%)
- □ (개선) IT 분야 회신의 적시성·충실성 확보를 위해 IT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증원(3인→4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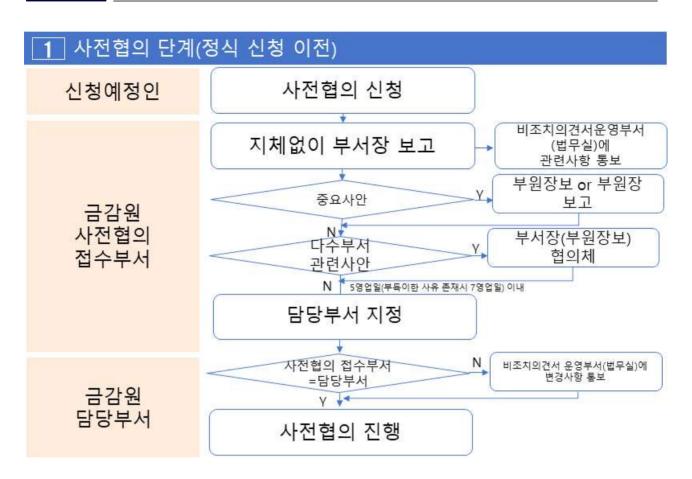
####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운영 관련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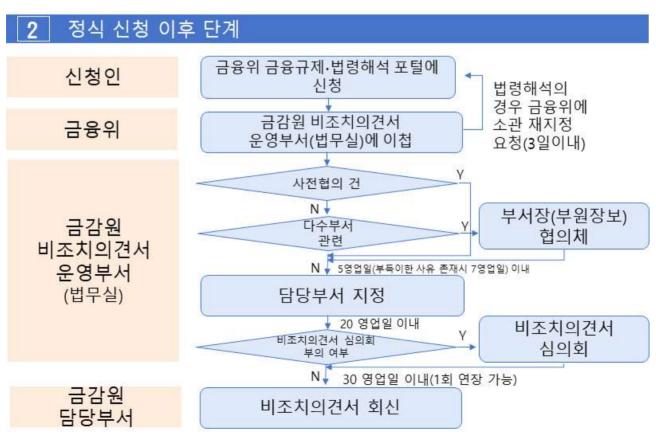
7 8	현 행	개 선		
구 분	<u>ස</u> න	전체회의	소회의(新設)	
위원회 구성	<ul><li>위원장(기획·경영 補)</li><li>법률자문관, 감총국장, 금소총국장 등 3인</li></ul>	(좌 동)	(좌 동)	
	• 외부위원 3인	• 외부위원 4인기존 3인+IT 전문가)	-	
심의사항	<ul><li>사실관계·쟁점 복잡</li><li>다수부서 관련사안</li><li>기존 회신사례와 차이</li><li>위원장 부의 안건</li></ul>	(좌 동)	• 다수부서 관련사안 중 사실관계·쟁점 간명 • 위원장 부의 안건	

#### 3. 향후 추진계획

- □ 「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」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 (11.30.~1210.) 실시 후, 동 규정 개정 및 IT 외부위원 위촉 추진(12월중)
  - ※ 사전예고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內 '금감원 소개 / 경영정보공개 / 12-2 정관 및 내부규정 제·개정 예고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☞ (붙임1)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이후의 업무처리 절차 (붙임2)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관련 Q&A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# 붙임1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이후의 업무처리 절차





- 1. 금번 제도개선으로 인한 처리기간 단축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?
- □ 비조치의견서 신청 前 **사전협의** 단계에서 **내부보고 및 관리 절차를 강화**함으로써 **사전협의 기간을 최소화**할 수 있는 절차 마련
- 특히, 그간 비조치의견서 회신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담당부서 배정과 관련하여 배정기한(5영업일 원칙), 관련부서장 협의체 등을 통한 결정 등으로 비조치의견서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
- □ 다만, 現 단계에서 비조치의견서의 처리기간 단축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기는 곤란(그간 사전협의 단계에 대한 공식적 관리 부재 등 감안)
  - 2. 사전협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?
- □ 비조치의견서 신청 예정인이 금융위의 「금융규제・법령해석 포털 (better.fsc.go.kr/fsc\_new)」을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정식으로 요청하기 전에,
  - <sup>①</sup>사실관계, <sup>②</sup>관련 법령, <sup>③</sup>신청 예정인의 의견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금감원 직원과 사전에 협의(구두, 서면 등)하는 것을 의미
  - 3.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할 경우 오히려 비조치의견서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?
- □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(법무실)에서 20영업일 내 처리가 어려운 사정 존재시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(기획·경영補)에게 부의를 건의 하는 등 담당부서의 비조치의견서 처리상황 등을 관리하고,
  - IT 외부위원 등의 자문의견 청취, 소회의(다수부서 관련사안 중 사실 관계·쟁점 간명·위원장 부의 안건 심의)를 적극 활용할 경우 회신의 충실성 뿐만 아니라 신속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